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. 10. 13 선고 2020가단9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9. 15.

판결 선고2020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, D, E에 있는 F아파트 G호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. 11. 10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2항)

판사임종효

별지